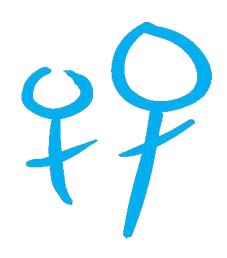
2020 정기회원총회



- ◆ 때:2020년 1월 29일(수) 오후 7:00
- ▲ 곳:함께하는거창 사무실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6길 8-8, 1F

전 화 055-942-1117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1월 29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 I부 -

사 회 : 권순모 사무국장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9년 결산보고
- 5.2019년 사업보고
- 6.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20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 임원개선의 건
- 9.기타 안건 토의
- 10.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공동대표 인사말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또 총회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몇가지 일들이 오 래된 영화처럼 기억이 나는데, 졸면서 본 드라마처럼 세세한 줄거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엔 저도 제법 총기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한가 봅니다. 이제는 참신한 후배들에 게 양보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세세한 줄거리는 떠오르지 않지만 제목은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의미있게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거창군의 연극제 상표 매입과 관련한 예산낭비를 감시 및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거창군 예산이 투입된 승강기대의 파행 운영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교도소 이전 관련한 운동본부에 매진하여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투표 운동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과정은 아름답고 숨찬 나날이였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총회를 끝내고 새로운 결과 더나은 결과를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어 나가야겠단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하였으나 사회 인식도 부족하고 투쟁의지도 모자란 제가 "함께 하는 거창"의 운전대를 잡은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인준 받은대로 앞으로 1년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4년이란 세월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산길에 들어서야 될 터인데 에너지가 더 고갈 되기전에내 힘으로 내려와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들 만나보면서 젊고 유능하고 에너지 넘치는 새 운전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전과 공전이 반복되어 계절은 바뀌고 바뀌어 지금은 2020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고 흥미롭고 중요한 한해가 될 듯 합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새 법무부장관의 한수가 궁금해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월의 총선이 그러하고, 2020년 미국대선의 결과와 그사이에서 연출되는 북한의 대처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모쪼록 모든 것이 코스모스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길 바랄뿐입니다.

빠트릴뻔 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새해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저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첫째는 금연, 둘째는 한 달에 한번 산행, 셋째는 한달에 한권 독서, 넷째는 함거에서 유종의 미거두기입니다. 모두 다 이루긴 어려워 보이지요? 회원님들. 2020년 한해도 원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길 바라옵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거창도 더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미숙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이기식

감사보고

2019년도 함께하는 거창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 드립니다.

1. 재정감사

- 요즘 재정상황이 좋은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함께하는 거창이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준 대표님과 사무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 안정적인 재정은 시민단체가 여러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원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나운영위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사업감사

- 2019년도에는 교도소 주민투표운동을 비롯하여 한국승강기대학 총장 및 이사회의 비리를 규탄하고, 연극제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책임 자들에 대한 문책요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거창평화축전을 공동개최하고 학술제를 주관하는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뜸했던 소식지를 통해 이러한 함께하는거창의 이야기들을 회원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운영위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권순모 사무국장이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청년의 당당함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부재속에 함께하는 거창을 운영해야합니다. 더불어 운영위의책임이 더욱 막중하게 되었지만, 잘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15일

2019 회의록

2019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 1. 개회선언
- 2. 공동대표 인사말

3. 감사보고

-회비수입의 감소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역동성,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 2018결산보고

- -사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지출과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첨부 함.
- -교육연구소, 작은권리찾기모임 계정을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분리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김경환 : 예산안이 너무 빡빡하다. 이월금으로 올해로 넘어온 현금 자산부 분까지 다 쓰겠다는 뜻인가?

권순모: 그렇지 않다. 이익을 남기면 안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상수입과 지출을 0으로 맞추려하다 보니 그렇게 짜여진 것뿐이다. 실제금액의 차이는 있다.

5. 2018 사업보고

- -실무자의 공석과 새로운 실무자의 영입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고, 조 직의 내실을 다지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한 해를 보냈다. 중단된 사업들도 다시 챙기겠다.
- -김향란 의원의 부도덕성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대부분 조기에 종료되거나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종료되었다.

- -거창교도소 원안추진에 대해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전하라는 김태경의원의 단식투쟁에 이기식 상임대표와 실무자가 하루씩 동참하였다.
- -푸른숲 산악회 정기산행을 3월과 11월에 실시하였다.
- -작은권리찾기모임은 신년에 한 번 모인 후 특별히 모이지 않았다. 재정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6. 정관개정

- -제4장의 "제5절 <함께하는거창 부속 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신설 한다.
- -목적은 "함께하는거창의 목적과 사업의 영역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 다."로 한다.
-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를 사업종료 및 폐지한다.
- 유영재 : 연구소가 출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연구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조직이다.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제시가 미흡하다.

신용균: 연구소는 아직 구체적인 정립단계에 있는 기구는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이니 지켜봐 달라. 정치를 비롯한 여러 제 분야에서 지역의 단체 또는 정당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과 우리의 존재가치를 찾기위한 단계에 있다. 그러한 맥락 속의 하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권순모: 타기관의 연구소 정관을 참고하여 만들다보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 문구에 대해서는 회의결과를 토대 로 수정하도록 하겠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관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자.

7. 2019 사업계획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의 4가지 부분에서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준: 이전에는 회원이 무언가 의견을 제안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한 답변이나 소통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식지가 됐든 다른 형식이 됐든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신용균: 다방면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유영재 : 전체적인 기조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때그때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고유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기식 : 회원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많이 뒤쳐진 홈페이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한다.

이종성: 우리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 여타 언론사에서 취하고 있는 형 태의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상중이며 밴드 또는 실무자를 통해 진행상 황을 알리도록 하겠다.

8. 임원개선

- -이기식 상임대표, 신용균 공동대표 연임.
- -조영준 감사 연임.

이상.

2019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19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보통예금	426,472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2,200,000	퇴직적립금	2,2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자 본 금	20,426,472	
합 계	22,626,472	합 계	22,626,472	

2.2019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37,606,144	일반회계 (사무국)	37,606,144	일반회계 (사무국)	426,472	
				작권모	2,939,679	
합 계	37,606,144	합 계	37,606,144	합 계	3,366,151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수 입 (2018년도)			수 입 (2019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전년도 이월금	7,536,997		전년도 이월금	6,664,849	
	회비수입	24,825,000		회비수입	24,340,000	
회비수입	후원금(시무국)	730,000	회비수입	후원금(시무국)	4,469,920	
	후원금(연구소)	2,170,00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작권모)	860,000		후원금(작권모)	450,000	
기타수입	이자수익	6,996		이자수익	5,375	
	차입금	0	기타수입	차입금	0	
	잡수입	3,353,000	기다구입	잡수입	1,676,000	
	임차보증금	1,500,000		부대비용	0	
수입합계		40,981,993	수입합계		37,606,144	

5.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지 출 (2018년도)			지 출 (2019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급 액	
	급 여	15,600,000		급 여	20,250,000	
	상여금	100,000	인건비	상여금	0	
인 건 비	퇴직적립금	1,075,000		퇴직적립금 (김하주퇴직금)	3,385,660	
	복리후생비	2,671,970		복리후생비	1,716,470	
	건물관리비	5,000,000		건물관리비	3,600,000	
	기기구입비	28,000		기기구입비	1,000,500	
	사무용품비	60,000		사무용품비	206,500	
الراح ما الراح	세금과 공과금	530	N II A alvi	세금과 공과금	650	
사무유지비	소모품비	0	사무유지비	소모품비		
	수선비	49,000		수선비		
	수도광열비	1,436,270		수도광열비	853,100	
	통신비	343,768		통신비	330,673	
	도서인쇄비	783,000		도서인쇄비	891,790	
	발 송 비	139,450		발 송 비	61,360	
	분 담 금	2,112,000		분 담 금	450,000	
사 업 비	사 업 비	1,148,360	사 업 비	사 업 비	1,056,070	
	회원활동비 (경조금)	300,000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의비	415,916		회의비	437,220	
	출장연수비	0		출장연수비		
사업외비용	잡 비	1,364,800		잡 비		
	예비비	0	사업외비용	वीधीधी		
	현 금	8,353,929		현 금	3,366,151	
지출합계		40,981,993	지출합계		37,606,144	

6.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수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o)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입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지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출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吾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 자산변동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보통예금	8,353,929 (29.0%)	3,366,151	-4,987,778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500,000 (1.7%)	2,200,000	1,700,000	퇴직적립금	500,000 (1.7%)	2,200,000	1,700,000
임대차보증금	20,000,000 (69.3%)	20,000,000	0	자 본 금	28,353,929 (%98.3)	23,366,151	-4,987,778
합 계	28,853,929 (100%)	25,566,151	-3,287,778	합 계	28,853,929 (100%)	25,566,151	-3,287,778

·보통예금: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

·적금(퇴직적립금): 전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차액 1,685,66 0원 지급. 현 실무자 퇴직연금보험 220만원 적립.

·임대차보증금(I): 이사 후 환수한 보증금 잉여금 150만원 은 사무국 계정으로 편입. ·퇴직적립금: 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 함께하는거창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2018년에 비해 4,987,778원 줄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II): 현재 사무실 보증금 20,000,000원.

2019년 사업보고

1. 거창교도소 주민투표운동

7/2(화) 거창읍보건소 2층 강당, 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관련 주민총회참석. - 70여명 참석(비대위 및 시사단, 시민 다수)

투표 범위(읍 한정, 군 전체) 협상에 대한 투표실시

- ➡ 총 투표인 수 48명(거창읍 한정 17표, 군 전체 31표)
- □ 거창군 전체가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 ◇ 선거운동관련 별도 회의개최, 투표인 모두 선대위 참여 결정 및 서명
 7/17(수) 교도소 이전을 위한 임시대책위원 단체 카톡 개설(서명했던 32인)
 7/24(수) YMCA회관 7:30 확대회의
- 1. 5자협의회 결과 수용(선거일자 등)
- 2. 김홍섭 총장 5자협의체 사무 당분간 지속 담당
- 3. 선거대책준비위 조직구성을 위하여 김홍섭 총장, 이점도 두 분에게 준비사무 위임

8/9(금) 광안리, 교도소 대책 임시회의 개최(추진준비위원회 임시대표 : 우성만, 실무 : 김재영, 권순모)

8/22(목) : 준비위 1차 회의(저녁 7시, 광안리)

8/29(목): 준비위 2차 회의(19시, 광안리), 기자회견프레스룸 사용신청(9/2, 10시)

8/30(금) : 9/3 출범식 집회신고(당일 15시~21시), 서명부 30개소 배포 완료 (백/권)

9/02(월): 기자회견 실시, 교육장 면담 공문 접수

9/03(화) : 거창교도소 부지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본부 출범식 실시

9/04(수): 전단지 배포(백성철/권순모), 출범식 보도자료 배포, 9/2기자회 견정정보도자료 발송

9/20(금): 확대상임위원회의(투표운동 관련 실무 및 점검)

9/22(일) : 확대상임위

9/23(월): 주민투표운동 시작, 오전 피켓팅, CJ HELLO 뉴스방송대담 녹화(신용균 공동대표), 부정투표감시단 발대식.

10/16 주민투표 실시. 유권자 투표 53,186명 중 28,088명 참가(52.81%), 개표결과 현재장소 추진 찬성 18,041표(64.75%), 거창 내 이전 추진 찬성 9,820표(35.25%).

신용균 공동대표가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권순모 사무국장이 상근

하면서 주민투표운동에 매진했으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안이 확정되었음. 주민투표운동 중 발생한 많은 범죄사실이 부정투표감시단에 의해 채증 되었고,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뒤따를 예정이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잡, 미묘한 감정의 선들로 꼬여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예측됨.

2. 김향란 의원 농지법, 선거법 위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 뜻을 알린 바 있으며, 개인차원의 강력처벌 탄원을 접수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임.

3. 박수자 의원 주민투표법 위반

소송 중에 있으며, 명확한 범죄사실에 대한 물증이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는 중임.

4. 한국승강기대학 김천영 전 총장 교비 유용 및 횡령

6/21(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승강기대 관련 자료 모두 송부 7/1(월) 최정환 의원 통화, 승강기대건 국감에 올릴 예정이라고 답변 들음. 자료 요청. 김천영 총장 사직

다소 미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현재 새로운 총장과 김천영 (이사장) 간의 민, 형사 소송으로 전개될 양상임.

5.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5/1(수) 문화관광과 연극제 계약서 원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보.

5/7(화) 국민신문고(문체부,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에 연극제 관련 예산당비신고 접수.

5/24(금) 오후 3시경 문화관광과에서 주무관, 계장, 과장, 박재영 위원과 함께 면담.

5/27(월) 문화관광과 계약서 공개 독촉 유선 연락, "기다려 달라" 28까지 기한.

5/29(수) 연극제집행위 측, 군청 상대로 소송 시작.

5/30(목) 2시경 CJ헬로비전 구지은 기자와 연극제 관련 인터뷰를 가짐.

6/4(화) 진주mbc 이준석 기자와 연극제 관련 인터뷰 가짐.

6/7(금) 오전11시, 군청 출입문 앞, 부당계약파기 기자회견

6/20(목) 부군수 면담(계약서만 공개, 나머지 3개 요구는 얼버무림)

6/25(화) 창원KBS <감시자들>,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분쟁에 대한 시 사방송 송출

6/28(금) 문화관광과, 계약협상관련자료 및 감정가보고서, 감정기초자료 공개요청 ⇨ 군수해외출장으로 기다려달라는 답변

7/11(목): 문화관광과에 시민단체 요구 이행 촉구 공문 송신

7/17(수) : 요구 이행 결과 공개 공문 회신(형식적 이행)

7/26(금): 국회문화체육위원장, 위원 의원실과 통화(국감검토요청)

8/14(수): 국회문화체육위원 우상호 의원실 유선통화(검토 요청 촉구) 국무총리실 민정실 통화 후 관련 자료 송부(검토 요청)

8/20(화): 시사단 및 문화예술단체 기자회견 실시

8/26(월): 신문보급소 통해 간지(전단지) 홍보 실시

8/29(목): 거창군 반박기자회견 실시

매입을 성사시키겠다는 군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매입금액에서의 합리성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상표권 매입'이라는 갈등해결의 수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임.

6. 권순모 사무국장의 사임

2018년 613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초의원 2번 후보로 출마했던 권순모 국장이 김태경 의원의 사퇴로 인해 자연 승계하게되어 사무국장직을 사임하였음. 급작스런 사무국의 공백에 유감.

7. 3.1운동 100주년 평화축전 개최

신용균 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와 함께하는거창의 신승열 운영위원이 회장으로 재임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이 3.1운동100주년거창 평화축전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학술제를 주관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거창의 시민사회가 하나 되어 성공적인행사를 치렀음.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총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 해 6월 시행된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여러 비리들로 거창군민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총장에게 내려진 3건의 중징계와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6건의 임원승인취소는 그야말로 학교법인이 비리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승강기대학교가 학교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학생들의 학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유용, 횡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지금에 와서 학교법인과 대학이 과연 떳떳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 2월 8일을 기점으로 이미 교육부의 조치이행요구의 기한을 초과했지만, 총장 중징계로 터무니없는 수준인 직무정지 한 달 징계를 내린 것과 직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이사선임 취소나 예산 반환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행태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같이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한 번 답습했기에 더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이번 비리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 1.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혈세로 설립된 공교육기관이었다.(2010.3.2)
- 2. 그러나 개교 1년 만에 법인비리로 이사장이 구속되었다.(2011.8.18)
- 3. 당시 함께하는거창(2011.3.23)의 철저한 수사요청, 시민사회단체의 이사장 사퇴요구(2011.4.7. 8개 단체)가 있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사학재단에 공공재인 학교를 넘겼고,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거창군민의 혈세가 꾸준히 투입되어 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 드러난 이들의 더러운 불법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꼼수에 군민의 신뢰는 바닥났다. 상위 부유층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국민들이, 거창군민들이 시장에서, 상점에서, 직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른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같은 추태를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침체하는 지역 경기의 근본적 이유는 이와 같은 소수에 의한 지역형비리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함께하는거창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혈세를 도둑질 하는 예산브로커, 정책브로커들에 대한 감시와 사법감시 또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따라서 육영사업에 관심 없는 사학이 들어서며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기회삼아 이러한 짓을 자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법인이반드시 져야 한다. 따라서 김천영 총장과 학교법인 임원들은 육영사업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범법요소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거창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총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거창군과 의회는 그간 투입되었던 군민혈세를 전액 회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처분을 강제 이행 조치하라!

하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과 이사들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대한 검찰수사요청서>

의뢰인: 함께하는거창

피의뢰인: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1. 수사 의뢰의 취지

피의뢰인은 학업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 그리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해야 하나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총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2. 수사 의뢰의 사실

①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영 총장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에 5,400여 만 원을부당하게 지출했고, 또, 대여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담보확보 없이 부당 지출했습니다.

또, 한국승강기대학은 학교기업의 수익금 2,000만 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의 출자를 목적으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전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에 대한 출장과 식비, 회의비 등 18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6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일괄해 계약을 체결해 야 하나 총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건설업체 (주)경보에 분 할 발주해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계획, 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4억 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 도급받을 수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계약,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총6건의 공사 계약을 전문면허 없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만 가지고 있는 (주)경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전문공사로 입찰대상인 공사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총 두 건의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③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지난 2015년 12월, 특수관계인(김천영 총장 본인과 두 명의 매형)이 소유한, 감정평가금액인 16억 원의 부동산을 20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수(안)을 의결했으며, 15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2016년 10월, 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환불요청을 했으나 1억 원만 회수하고 현재까지 1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 ④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교육 부의 실태조사 결과 10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 중 위법 요소가 포함 된 지적도 다수 있습니다.

3. 수사 의뢰의 이유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지금까지의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 없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비위 사실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건전한 법인 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거창 주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 대학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결론

위의 내용처럼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이같은 비위를 뿌리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첨부하오니 이같은 비리 사학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 2. 20

함께하는거창 (직인)

<한국승강기대학 총장은 사퇴하라!>

옛말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고 했다.

한국승강기대학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 비리 등 부실 운영으로 중징계 세 건과 경징계 여섯 건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다른 지역도 아닌, 전국적인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곳 거창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도시 거창의 교육계를 망신주고 흐려놓은 '꼴뚜라지' 한국승강기대학 김천영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승강기대학교는 2011년 법인 이사장의 비리에 이어 작금의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거창군 소재의 사립학교법인과 총장이 반복적인 유용과 횡령의 정황으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됨으로써 뜻있는 거창군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오늘의 집회는 지난해 6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명명백백 드러난 비리 사실로써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이사진과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학교법인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거창'이라는 단어는 오랜 세월 수많은 군민들의 삶과 땀의 결실이 담겨 있는 고유명사이다.

교육도시의 대표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창'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거창군민이라면 모두 천인공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들은 김천영 총장이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김천영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9. 5. 22

함께하는거창/거창YMCA/푸른산내들/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여성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언론소비자주권행동서부경남지부/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민족미술인협회거창지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부당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거창군은 6만여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 당계약을 원천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군은 거창연극제육성진홍회 및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과 '거창국제연극제KIFT' 상표권과 연극제 개최권 매입에 대한 계약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의심과 논란이 증폭되어왔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보공개 청구와 유선을 통한 공개요청 및 담당과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요청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송에 휘말리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지역사회에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흥회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이것은 거창군이 진흥회 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개인 및 단체와의 계약에 있어 거창군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하였다.

논란의 계약서 내용에는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진흥회 및 집행위 측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거창국 제연극제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객관적 지표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무슨 기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구가 지역 정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판단과 생각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계약에 의한 양측의 감정평가 기초자료들은 신뢰할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상표권 매입이 타당한 것인지, 거창국제연극제 논란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제의 계약서상에는 양측의 감정가에 대한 상한액 설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거창군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조항이다. 또,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는 양측의 조건이 달라 절충을 요구하고 수용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도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예산 낭비를 촉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을 더하며 스스로의 발목을 옭아맸다. 게다가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무려 30년 역사의 연극제에 가격표를 매기고 협상까지 마무리 지어, 합의된 최종 감정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항도 있다고 한다. 이제 거창군민은 눈을 뜨고도 혈세를 도둑맞게 생긴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의 담당 공무원 및 결재 권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를 조장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 연극제의 소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지난 20년여 동안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연극제 측은 불합리한 논리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여 그동안 숨겼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만 천하에 드러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동안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 등으로 수많은 의혹을 야기했고, 거창군의 예술계에 오명을 씌웠으며,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흑역사를 썼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연 거창국제연극제에 예전만큼의 가치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에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 대표는 아직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부당한 계약을 즉각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 거창시민단체와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하나.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를 파면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이 사태에 대해 거창군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거창군은 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범군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9. 6. 7

함께하는거창/민족미술인총연합회거창지부/우리문화연구회/거창문학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서부경남지부거창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거창YMCA/푸른산내들/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 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 특혜성 계약 체결한 거창군수 구인모는 즉각 사퇴하라!

- 1. 거창국제연극제는 천혜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관광산업 콘텐츠로 주목받았고, 우리 거창 시민사회문화단체도 국제연극제의 성공을 기원해 왔다. 거창국제연극제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논란 등은 군민의 비난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는 일찍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감독 공모를 통한 연극제의 질적 향상과 금전 부정 문제 해결방안을 거창군에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거창군과 연극제 측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악화시켜 현재 연극제가 중단된 채 상표권 소송이라는 세금 빼먹기 싸움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난수개월 간 조사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현 거창군수 구인모의 실정 때문이라는 결론에도달했다.
- 2. 구인모 거창군수는 후보 때 연극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초반인 2018년 9월 13일, 문화관광과 과장 외 2명과 함께 거창국제연극제측(이종일, 조매정, 최민식)과 민관간담회라는 형식으로최초 접촉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단계에서 거창군은 연극제의 상표권을 빌려 쓰고, 연극제 측은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는 상호 간 업무협약이 논의되었다. 2018년 10월 12일, 거창군 측에서 작성한 업무협약서를연극제 측에 전달하였으나 연극제 측은 10월 15일 수용 불가 의사를표하며 다음날인 10월 16일에는 일부 조항을 수용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0월 17일, 연극제 측에서 뜬금없이 상표권매각 의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은 왜 갑자기 업무협약에서상표권 매각으로 연극제 측의 의사가 돌변했는가에 대한 깊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3. 2018년 12월에 체결된 거창군과 연극제 측의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고, 거창의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 단체는 2019년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서 원본 공개와 협상 내용 공개, 계약 취소, 담당 공무원 처벌, 군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거창군은 6월 20일,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는 언론의 보도와 시중의 소문처럼 상표권 금액의 산정, 계약파기 조건에서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거창군의회 자료에따르면 이 계약서는 연극제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변호사의 자문도 없이계약을 체결했다. 연극제 측은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수용하지 않자 5월 27일, 소송에 돌입했다.

- 4.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00억 원을 상회하는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극제 측에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었다. 그 결과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벌써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 5.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요구로 전해 받은 7월 17일 자 거창군의 공문에서 거창군은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제연극제의 일이잘되지 않았다는 언급을 사과라고 변명했다. 또 7월 19일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발령에서 당시 과장,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문책성 인사라며 핑계를 댔다. 이 말인즉, 유태정 과장과 박래만 주무관이 계약의 총책임자란 말인가?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이 면장 발령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6.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소송 문제로 이미 거창군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올해 국제연극제가 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TV, 신문, 라디오에서 수십 차례 그 실정과 의혹이 보도되었다. 수십 년간 국제연극제를 통해 쌓아 올린 거창의 명성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거창군수는 염치도 없는가!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 7. 우리는 오랫동안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특혜성 계약에 대한 거창군수의 솔직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후안무치, 부끄러움도 모르고 군민을 기만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인모는 거창군민을 바보로 아는가! 우리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생각이 없으며, 명백한 실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8. 한편,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 한다." 라는 옛말이 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비, 도비, 군비의 약 1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 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2011년경 야외공연예술축제로서의 명성에 정점을 찍기에 이르렀다. 혈세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26억 원의 가치의 1/10도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키운 축제 이름을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고 삼류코미디보다 하찮은요구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2019년 작금의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국에는 이미 거창국제연극제 보다 월등히 우수한 놀거 리,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상표권의 감정가를 최근 3년간의 축제 자료를 제외한 철 지난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역자료를 바 탕으로 산정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엉터리인 것이다. 최근 3년의 파행 이 반증했듯이 세금 투입이 없으면 그 가치도 보잘것없는 축제가 무슨 26억 원이란 말인가! 거창군에서 제기한 계약파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데 거창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거창국제연 극제 측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몰상식한 매매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향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을 책임져라.
-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작금의 실정이 지자체의 장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라.
-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스스로 야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 라!
- 하나,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 하나, 우리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되어 지역문화와 경제에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 향후 거창군은 연극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문화 재단에 일임하고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멍청한 송사에 휘말리 지 않도록 매사에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고 업무를 진행하라. 또 한,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매매행위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매매에 대 한 투명성을 확립하라. 나아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거창국제 연극제의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공연예술 계 인사들로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위원회>를 설 립하라.

2019. 8. 20

함께하는거창/민족미술인총연합회거창지부/우리문화연구회/거창문학회/언론소비자주권행동서부경남지부거창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거창YMCA/푸른산내들/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입장문>

교도소는 외곽 이전, 현 부지 공공병원+연수원 유치해서 거창발전의 계기로 삼자

거창교도소 이전 찍으면 이전 됩니다

무려 6년간 지겹도록 긴 갈등이었습니다.

군민들도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이미 착공된 국책사업을 주민들의 힘으로 멈춰 세운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이미 거창군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국가사업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년을 그렇게 처절하게 호소한 끝에 법무부가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전」을 입에 담지도 않았던 법무부가 주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공언했고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거창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공사업 1+1+1'투표입니다.

꿩 먹고 알 먹는 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공병원과 공무원연수원 또는 공기업연수원을 더 유치하는 투표입니다.

공공병원은 김경수도지사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센터와 심혈관센터를 갖춘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거창에 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유치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외곽이전을 결정한다면

이미 유치경쟁에 들어간 경남도공무원연수원과, 경남으로 이전을 논의 중인 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기업의 연수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거창은 명분과 유치준비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미 법무부와 경남도가 합의서에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못 받은 인센티브 챙겨 받아야 합니다. 교도소 부지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공기업 또는 경상남도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확보되어 터를 닦아 놓은 입지 최상의 부지가 있습니다. 결정만 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공공사업을 최소한 두개 더 유치하는 투표이고 거창발전의 초석을 놓는 투표입니다.

교도소를 어디 다른 곳으로 내보내자는 투표가 아닙니다. 학교와 주거가 밀집하지 않은 외곽으로 교도소 부지를 옮겨서 짓자는 것입니다. 교도소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어디가지 않습니다. 건설경기는 활발해지고 교도관들이 이사와 인구는 늘 것이며 면회객으로 유동인구도 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래 교도소를 짓기로 했던 그 자리에 공공병원과 연수원을 더 유치하자는 투표입니다.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교도소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길은 주민투표로 이전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1+1+1 공공사업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전 찍어서 이전 시켜주십시오. 공공사업 1+1+1 실현시켜 주십시오.

성명서

거창군의회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의결에 즈음하여

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우리는 지난 6년 치열하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동안 상대측에서 자행한 횡 포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5자 협상에서 주민투표를 수 용한 것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 서 거창군민이 혁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투표 운동이 금지된 며칠 동안 발생한 일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주민투표'의 의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창군과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서로 결탁하여 '주민투표'를 마치 혼탁한 '공직자 선거'로 만들려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히 5자협의체 주민투표 합의를 깨는 행위였다.

첫째, 거창군수, 지역 언론,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의 검은 유착 의혹이다. 교도소 찬성 측 핵심인사인 최민식, 박종대 등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구인모 군수 군정 운영 만족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운동 금지 기간에 SNS에서 선전하였고, 심지어 거창군수 구인모까지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렸다. '거창군수의 군정에 만족하고, 거창구치소는 현재 장소에 추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이었으니, 그 의도는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행위가 있었던 때는그 언론기관이 보도하기도 전이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거창군, 지역 언론, 토착세력의 결탁이 의심된다. 이러한 고리가 계속되는한 공정한 주민투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거창군이 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이다. 이 공문은 투표 운동 금지사항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누가 거창군청에 투표 운동을 감독할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주제넘은 간섭이자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 사실은, 거창군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교도소 문제를 야기했고, 몇 년 동안 군민을 엄청난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마치 군민의 위에 군림하는 감독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거창군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는 한 이번 주민투표에서 관권개입 버릇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셋째, 지역 언론의 오보이다. 9월 5일 자 창원일보 1면은 관련 기사 제목을 "구인모 거창군수 구치소 건립 원안 군 의회 제출"이라고 뽑았 다. 명백한 오보이다. 이것은 본 군민들은 '구치소 건립 원안'이 추진되 는 줄 알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을 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거창군에 정정 보도 요청을 요구했으나 아직 정정 보도를 보지 못했다. 설사 정정 보도가 실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미 나간 거짓 정보가 바로잡힐지 의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일부 악질 지역 언론의 횡포를 무수히 보았는데, 주민투표 운동 기간 중 또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서 거창군수,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 일부 지역 언론이 자행한,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를 무수히 당해왔다. 사실 왜곡, 흑색선전, 인신공격, 폭력 행사에서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위에서 적시한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투표 운동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투표 운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거창군수는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과의 결탁을 단절해야 함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6년 전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군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것은 6년 전 거창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강행한 거창교도소 신설이 잘 못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대리 서명'이 뚜렷한 증거이지 않은가! 이 때문에 지난 6년 거창은 얼마는 큰 갈등과 비용을 치러야 했던가! 그러면 거창군은 먼저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군민에게 사과한 후 겸손하게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창군수가 토호세력과의유착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라도 정책이 충분히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시에 양측의 정책이 정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세를취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우리 본부와 '신사협정'을 맺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

에 '신사협정'에 제안한 바 있다. 교도소 찬성 측이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기 바라거니와, 이에 앞서 이홍기 전 군수에게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반성하고 겸손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홍기 전 군수는, 그릇된교도소 유치 강행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군수는 당선만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군수직을 떠나면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라면 알고 있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뭉개버린다면, 그는 거창인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 그동안 못된 행동을 일삼았던 거창군청 공무원과 학교 앞 교 도소 찬성 측 인사, 그리고 일부 지역 언론도 그동안 학부모 어머니들 에게 자행한 만행을 사과하기 바란다. 비방, 왜곡선전, 인격 모독, 인신 공격, 폭행,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학부모 어머니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가! 어 머니들의 '교육도시 거창'에 대한 자부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학부모 어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나의 주체로 주민투표에 참 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어제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우리의 '신사협정'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신사협정'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사가 아닌 자가신사협정을 지킬 리 없는 법이다. 진정한 반성 후에라야 양측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아래,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왜곡선전과 흑색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우리는 교도소 신설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교도소와 같은 소위 '혐오 시설'을 신설하는 지역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홍기 전 군수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교도소를 유치했고,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수천억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떠벌렸다. 도대체 그가 무슨 의도

를 가졌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우리는 그동안 거창교도소 신설에 합당한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해왔다. 교도소 찬성 측은 거짓부렁, 억지 주장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더 나은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우리 운동본부와 협조하기 바란다. 무임승차는 염치없는 짓이며, 옛 어른들은 염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을위해 상대측의 무임승차를 허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미 5자 협상에서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라고합의한 만큼,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성공하기 바란다. 정책주민투표는 공직자 선거와는 다르다. 공직자 선거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가 관건이다. 반면, 정책주민투표는 정책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러 정책을 비교하게 하여, 주민이 올바른 선택은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도 다르다. 공직자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지만, 정책주민투표는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양측이 경쟁이라기보다 협조하는 관계이다. 이번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양측이하나의 정책을 합의해 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반면, 우리 운동본부가 우려하는 바도 적지 않다. 만약 주민투표가 타락한 공직자 선거처럼 변질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지난 6년간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 과정에서 독선적인 행정, 그와 결탁한 토호세력과 일부 지역 언론이 자행한 야만적인행위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죄 없는 이장을 동원해 작성한 대리 서명 서류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제 거창 어떤 면의 한 이장은 방송을통해 "빠짐없이"주민투표에 참여하라고 주민에게 공고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장이 방송을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부정 선거운동이다. 만약 이번 투표과정에서 부정 투표 운동 작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민투표 운동을 포기하고 즉각 '학교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

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2019. 9. 19

교도소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

장차 거창교도소로 인해 발생할 불행의 모든 책임이 거창교도소 추진 세력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둡니다!

- 1. 이번 거창 주민투표에서 주거와 학교 밀집 지역에 있는 교도소 터를 이전하는 데 찬성해주신 투표자의 35% 이상인 1만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년여 간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을 벌여 온 모든 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거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의롭고 깨어 있는 거창군민이십니다.
- 2. 거창 주민투표 기간 관권 개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노골적이고 거 창군수와 원안 측의 광범위한 탈법·부정행위로 인하여 군민의 통일된 의사도 도출하지 못했으며, 갈등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 3. 다수 선량한 군민이 저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속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이자 현행주민투표법입니다. 반면 관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교도소 추진 세력의 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 4. 거창에 공공종합병원, 공기업 공무원 연수원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교도소 추진 세력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장차 거창교도소로 인해 군에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과 교도소 인근 주민 60% 이상이 반대한 거창교도소로 지역민에게 생겨나는 피해 또한, 전 적으로 교도소 유치 세력이 책임져야 합니다.

6. 이 같은 사태 발생 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교도소 추진 세력의 주요 인물을 명기해 둡니다.

전 거창군수 이홍기 전 국회의원 신성범 현 국회의원 강석진 현 거창군수 구인모 원안 측 대표자 김칠성, 최민식 행정동우회 회장 및 일부 회원 목우회 회장 및 일부 회원

7. 이번 주민투표 운동 내내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과 격려로 큰 힘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10.18.

교도소 터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상임대표 신 용 균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 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함께하는 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 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수 있다.
-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

독대문영위원회는 제16소 2명에 의가 구성할 수 있다. 단, 문영위원 1/5이성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 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 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거창지역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거창지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수입)

-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 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거창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